박상구 의원 (도시계획관리위원회, 더불어민주당)

□ 요구번호 : 624 번

□ 요구내용

<2019년 3월 20일(수) 제4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조건부 가결한 '도시관리계획(용도지구) 변경 결정(안)' 관련>
* 김포공항 주변 고도지구 폐지를 중심으로
1. 관련 법 근거
2. 회의 개최현황 및 결과보고서, 회의록
3. 위원 명단
4. 회의(심의) 자료
5. 결정 조서

1. 관련 법 근거

가.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13조(지역·지구 등의 지정과 운영실적 등의 평가)

- 지정목적과 행위제한 유사 중복 지역 지구 통합 일원화
- 과다 중첩지역 지구 해소를 통한 토지이용 합리화 및 간소화 등

나.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4조(도시관리계획의 정비)

- 지정목적 달성 및 여건변화 등으로 존치 필요성 없는 용도지구 해제

2. 회의(심의) 개최현황 및 결과보고서, 회의록(행정팀 협조)

가. 개최현황 및 결과보고

○ 심의명 : 제4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
○ 일 시 : 2019.3.20.(수) 14:30~18:00
○ 장 소 : 본청 2층 공용회의실
○ 참 석 : 21명 (내부 4, 외부 17)
○ 개최결과 : 조건부가결
○ 안 건 명 : 도시관리계획(용도지구) 변경(안) [김포공항주변 고도지구외]
○ 안건개요 : 강서구 김포공항주변 고도지구 폐지(80,193.0㎡)
○ 심의결과 : 조건부가결
- 용도지구 폐지 시에도 관련 법령에 따른 세부 높이기준 등이 있는 경우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의 표기방안은 일반 시민이 알기 쉽고,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구체적인 수치를 표기

나. 회의록

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113조의 3,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61조 제3항에 의거하여 열람의 방법으로 공개 가능

3. 위원 명단

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명단

(2019. 3. 15.기준)

연번	직 책	성 명	현 직	분야
1	위 원 장	진 희 선	행정2부시장(임명직)	시공무원
2	위원(내부)	강 맹 훈	도시재생실장(임명직)	시공무원
3	〃	권 기 욱	도시계획국장(임명직)	시공무원
4	〃	류 훈	주택건축본부장(임명직)	시공무원
5	위원(시의원)	노 식 래	서울특별시의회 의원	시의원
6	〃	김 재 형	서울특별시의회 의원	시의원
7	〃	신 정 호	서울특별시의회 의원	시의원
8	〃	정 재 웅	서울특별시의회 의원	시의원
9	〃	이 석 주	서울특별시의회 의원	시의원
10	위원(외부)	이 동 진	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	구청장
11	〃	김 기 호	걷고싶은 도시 시민연대 대표	시민단체
12	〃	이 창 수	가천대 도시계획학과 교수	도시계획
13	〃	이 주 헌	법무법인 청목 변호사	법 조 인
14	〃	김 찬 호	중앙대 사회기반시스템공학부 교수	도시재생
15	〃	이 인 성	서울시립대 조경학과 교수	도시계획
16	〃	라 도 삼	서울연구원 전략연구실장	문 화
17		홍인옥(女)	도시사회연구소 소장	주택정책
18	〃	최 창 규	한양대 도시대학원 교수	도시설계
19	〃	김 영 욱	세종대 건축학부 교수	건축설계
20	〃	윤혜경(女)	홍익대 건축학부 부교수	건 축
21	〃	구 자 훈	한양대 도시대학원 교수	도시경관
22	〃	정 진 혁	연세대 도시공학과 교수	교 통
23	〃	**이선영(女)**	서울시립대 건축학부 교수	건 축
24	〃	**윤 동 근**	연세대 도시공학과 부교수	방 재
25	〃	**김 정 신**	단국대 건축학부 교수	역 사
26	〃	**김 도 년**	성균관대 건축학과 교수	도시경관
27	〃	**이 승 주**	서경대 도시공학과 교수	도시경제
28	〃	**이미영(女)**	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	교 통

4. 회의(심의) 자료 : 도시관리계획(용도지구) 결정(변경) 심의자료 발췌

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근거

■ 심의 근거

✓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(도시·군관리계획의 결정)

✓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7조 및 동 법 시행령 제31조(용도지구의 지정)

✓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4조(도시관리계획의 정비)

- 지정 목적과 행위제한내용이 유사한 지역·지구 통합 일원화
- 여건변화를 반영한 적극적인 변경·해제 유도
- 과다·중첩지역·지구 해소를 통한 합리화 및 간소화 등

✓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13조(지역·지구 등의 지정과 운영실적 등의 평가)

- 지정목적 달성 및 여건변화 등으로 존치 필요성 없는 용도지구 해제
- 다른 법률에 따라 중첩된 용도지구 존치 타당성 여부 등

■ 주요 심의 사항

✓ 도시관리계획(용도지구) 변경 결정(안)

- 김포공항주변 고도지구(1개소), 특정용도제한지구(학교)(2개소), 시계경관지구(3개소), 방재지구(5개소) 폐지

용도지구 결정 현황

■ 김포공항 주변 고도지구

공항 및 비행안전 보호 목적, 6개 자치구(강서, 양천, 구로 등) 운영, 건축물 높이제한

• 지정 목적

- 공항시설의 보호와 비행기 이착륙의 안전 도모

• 지정 현황

- 위치 : 김포공항 주변(80,193,000㎡)

* 1977.04.27. 항공청 요청에 따라 최초 지정

• 행위 제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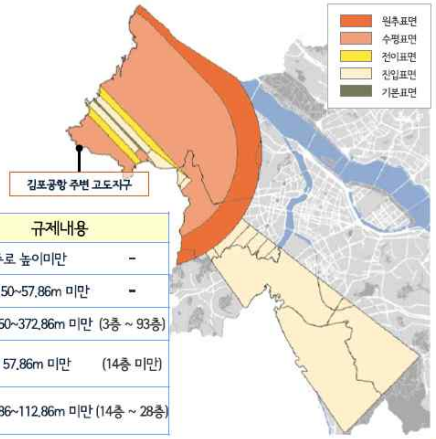

구분	면적(㎡)	관리대상	규제내용
기본표면	1,869,000	활주로 이·착륙시 안전도모	활주로 높이미만 -
전이표면	3,097,000	활주로 및 이륙시 경사면	해발 10.50~57.86m 미만 -
진입표면	33,204,000	이·착륙시 비행기의 진입을 위해 설정	해발 12.50~372.86m 미만 (3층 ~ 93층)
수평표면	29,129,000	착륙시 지상의 이상유무 확인을 위한 공중선회 구역	해발 57.86m 미만 (14층 미만)
원추표면	12,804,000	수평표면을 보호하고 항공기의 안전이동을 위해 설정	해발 57.86~112.86m 미만 (14층 ~ 28층)

용도지구 결정(변경)(안)

■ 김포공항 주변 고도지구 결정(변경)(안)

• 결정(변경) 조서

구분	도면표시번호	지구명	위 치	면적 (㎡)	고도제한내용
폐지	①	김포공항주변고도지구	기본표면	1,869,000	활주로 높이미만
			전이표면	3,097,000	해발10.50~57.86m 미만
			진입표면	33,204,000	해발12.50~372.86m 미만
			수평표면	29,129,000	해발57.86m 미만
			원추표면	12,804,000	해발57.86~112.86m 미만
			계	80,193,000	

• 결정(변경) 사유서

지구명	면 적	변경 사유
김포공항 주변 고도지구	80,193,000㎡	- 「공항시설법」 장애물제한표면고도제한과의 중복규제 해소를 위하여 용도지구 폐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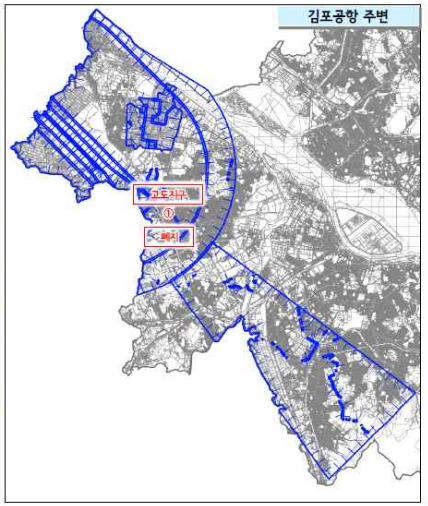

용도지구 폐지 필요성

■ 실효성 없는 중복 규제

일부 용도지구는 유사목적의 타 관리제도와 중복 규제

공항 고도지구 ➔ 「공항시설법」 행위제한 중복

- 고도지구에 따른 높이 제한은 「공항시설법」의 장애물제한표면에 따른 고도제한을 중복 적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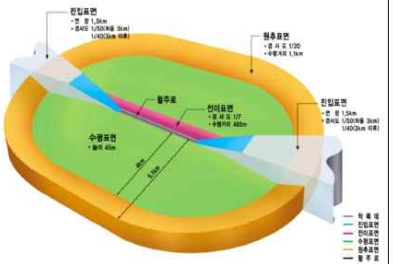

특정용도제한지구 ➔ 교육환경보호구역 중복

- 특정용도제한지구(구 학교시설보호지구)와 교육환경 보호구역의 행위제한 사항은 대부분 중복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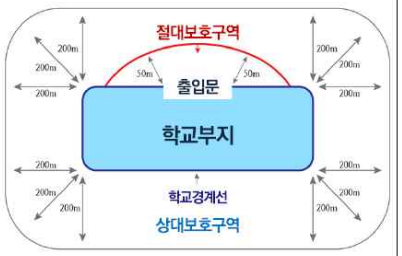

폐지 후 관리방안

■ 김포공항 주변 고도지구

「공항시설법」에 따른 장애물제한표면으로 관리체계 일원화

도시관리계획(안)에 대한 의견청취 및 관련부서 협의

❍ 주민의견 청취 사항

- 공람기간 : 2018.12.06~12.21 (14일간)
- 공람방법 : 서울신문, 아주경제신문 (2개 일간신문)
- 주민의견 : 의견 없음

❍ 관련부서 협의의견

- 청취일시 : 2018.12.06~12.21 (14일간)
- 협의의견 : 송파구 1개 부서 1개 의견

❍ 서울 시의회 의견청취 사항

- 의견청취 일시 : 2019.02.28
- 의견청취 의견 : 의견 없음
- 의견청취 결과 : 원안 동의

주관부서 검토의견

○ 금번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(안)은 다른 법률에 따라 중첩되거나,
지정 목적 달성 및 지정 취지 상실, 시대여건변화 등으로 실효성을 상실한
불합리한 용도지구를 재정비하는 사항으로,
토지이용 중복규제 폐지를 통해 주민불편 해소 및
합리적인 도시관리 정책 실현을 위해 원안가결이 타당하다고 판단됨

5. 결정 조서 : '19.4.25일 결정고시 예정으로 결정고시(안) 발췌 첨부

서울특별시고시 제2019- 호

도시관리계획(용도지구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
서울특별시 전역의 김포공항주변 고도지구, 특정용도제한지구, 시계경관지구, 방재지구 폐지에 대한 도시관리계획(용도지구) 변경 결정(안)에 대하여 2019년 제4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(2019.3.20.) 심의를 거쳐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(용도지구)을 결정(변경)을 고시하고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2조와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
2019년 4월 25일
서 울 특 별 시 장

1. 결정(변경) 취지
본 결정은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4조에 근거하여, 토지이용 간소화 및 합리화 추진위한 용도지구 체계적 정비의 일환으로, 타 법령·제도와 중복규제 중이거나 지정 목적 달성 및 지정 취지 상실 및 시대적 여건변화 등으로 실효성을 상실한 용도지구를 폐지하는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사항임.

2. 도시관리계획(용도지구) 결정(변경) 사항

○ 결정(변경) 조서

구분	지구명	위 치	면적(㎡) 기정	면적(㎡) 변경	면적(㎡) 변경후	최초 결정일
폐지	김포공항주변고도지구	기본표면(강서구 일부지역)	1,869,000	1,869,000	-	1977.4.22.(서고 제120호)
		전이표면(강서구, 양천구 일부지역)	3,097,000	3,097,000	-	
		진입표면 (강서구, 양천구, 구로구, 영등포구, 동작구, 관악구, 금천구 일부지역)	33,204,000	33,204,000	-	
		수평표면(강서구, 양천구 일부지역)	29,129,000	29,129,000	-	
		원추표면(강서구, 양천구, 구로구 일부지역)	12,804,000	12,804,000	-	
		총 계	80,193,000	80,193,000	-	

○ 결정(변경) 사유서

지구명	면 적(㎡)	변경 사유
김포공항주변고도지구	80,193,000	-「공항시설법」장애물제한표면 고도제한과의 중복규제 해소를 위하여 용도지구 폐지

※ 총면적 80,193,000㎡은 서울특별시고시 제1994-138호('94.5.6.) 고도지구 결정조서 상 면적임.

○ 김포공항주변 고도지구 결정(변경)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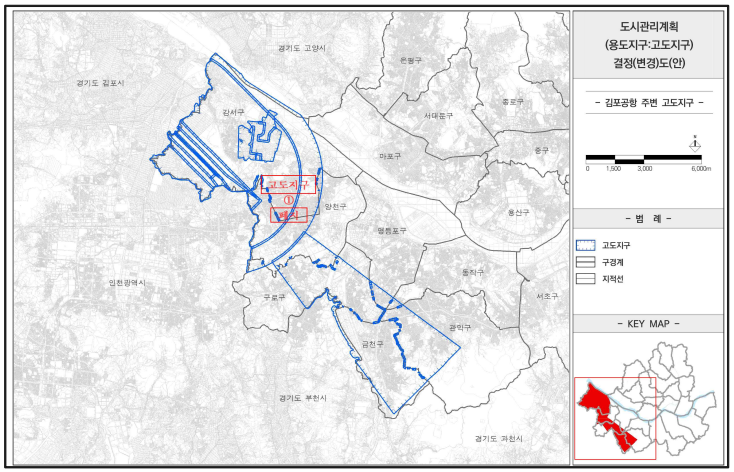

	기관명 (부서명)	직위	성명
작 성 자	도시계획국 (도시계획과)	담당사무관	한영희
		담당자	허선주
		담당사무관	유봉모
		담당자	김경신
	작성일 : 2019-4-12		